#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1. 선정개요

항 목	세 부 내 용
공사 출자규모	○ 6,000억원 이내
선정 운용사 수	○ 4개사 이내 (2,000억원 2개사, 1,000억원 2개사) - 평가 순위에 따라 큰 금액을 배정하되, 평점 상위 운용사가 공사 배정 예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요청한 경우 차순위 운용사가 큰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음 - 적격 운용사가 없는 경우 출자규모 및 선정 운용사 수 조정 가능
주목적 투자대상	○ 투자기간 동안 납입출자금 총액의 60%와 공사 출자비율중 높은 비율 이상을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,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는 출자약정금 총액의 60%와 공사 출자비율중 높은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함  〈주목적 투자대상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> ① 녹색기술산업, 첨단융합산업, 고부가서비스산업(녹색금융 제외)등 지식경제부 선정 16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 ② 정부의「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」에서 선정한 27대중점육성기술 분야 기업 ③ 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등 지원분야(녹색금융 제외)해당 기업  - 고부가서비스산업* 영위 기업 투자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추가지급을 통해 우대 예정 * 고부가서비스산업: 글로벌 헬스케어, 글로벌 교육서비스, 콘텐츠·소프트웨어, MICE·관광

투자기구 및 선정대상	○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제9조제18항7호에 따사모투자전문회사(PEF)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 - 공사 출자 '10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일괄공모에 의위탁운용사중 접수마감일 현재 투자잔액 기준으로 해당 필출자약정액의 60%이상 소진한 운용사는 제안 가능 - 제안 운용사의 운용중인 기존펀드 정관에 "경업금지 조항"이 있본건 일괄공모 펀드가 "경업금지 조항"의 제한 대상 펀드로 해석되경우 해당 펀드 출자자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해당 증빙을 첨부경우에만 금번 위탁운용사 선정사업에 제안 가능
위탁운용사 선정방법	○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일괄심사방식으로 선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 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
공고일	○ 2011년 9월 21일(수)
출자 설명회	○ 2011년 9월 23일(금)
접수 마감일	○ 2011년 10월 17일(월)
최종 선정일	○ 2011년 11월 상순
펀드 결성시한	○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* 펀드결성일은 펀드 결성을 위한 결성총회일로 봄
기 타	<ul> <li>○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,</li> <li>① 기존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기</li> <li>② 기존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/3 이상이 제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면,</li> <li>기존펀드 운용실적 등을 본건 제안 운용사의 실적 등으로 양하여 평가</li> <li>○ 단,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, 법인설립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</li> </ul>

# 2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 부 내 용						
공사 출자비율	○ 펀드 약정총액의 70% 이하						
최소 결성규모	공사 출자약정 최소 결성규도	,	<u> </u>	0억원		1,000억원 1,500억원	
존속기간	○ 8년 이내 (2년 이내 연장 가능)						
투자기간	○ 4년 이내 * 설립일 이후 2년이내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펀드 청산요건이 될 수 있으며, 청산시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원금보전을 해야 함						
위탁운용사 의 <del>무출</del> 자비율	○ 펀드 약정총액의 2% 이상 (계열사 출자분을 포함하여 산출)						
우선손실충당	○ 위탁운용사의 우선손실충당 의무비율은 없으나,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시 반영						
출자금 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방식						
	출자약	정총액		2,000억원	이하	2,000억원	초과
	투자기간	미투기	<b>아잔액</b>	0.8% 이하		0.8% •	하
- 기 - 기 기 . 시 . 스		투자지	l산 잔액	1.3% 이하		1.2% •	하
관리보수	투자기간 이후	투자지	나산 잔액	1.2%	하	1.1% •	하
	* 관리보수는 펀드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,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,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수행 관련 비용의 지급과 업무집행사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선 사용						
성과보수	○ 기준수익률(IRR 8%) 상회시 초과이익의 20% 이내 ○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투자중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건에 대하여는, 동 투자건의 초과이익중 공사 해당분의 20%를 성과보수로 추가 지급						

수탁회사	<ul> <li>○ 공사가 지정하는 수탁회사 Pool중 선정</li> <li>○ 펀드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</li> <li>○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
회계감사인	○ 공사가 제시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중에서 선정
출자자 제한	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
ERP	○ ERP시스템 사용 의무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 부담 ○ 펀드운용 관련 공사가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
펀드결성 마감방식	○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 허용하지 않음
핵심운용인력	<ul> <li>○ 금번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은 3인(대표펀드매니저 1인 포함) 이상 참여</li> <li>- 자격요건 : 투자경력<sup>1)</sup> 3년(대표펀드매니저는 5년)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○ 약정총액의 60%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</li> </ul>
유시목적 펀드 설립 제한	○ 본 펀드 소진율이 60% 미만일 경우 유사목적 및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 제한
기타	○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과 개별 협의

- 1) 투자경력: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재직중에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 등의 투자(트레이딩, 공모펀드 운용 등 단기 수익 획득 목적 투자와 주관사 업무 및 인수 업무로 인한 투자 제외)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발굴, 투자검토, 사후관리, 회수 등의 실무 수행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경력
- ※ 출자조건 중 위탁운용사 출자비율, 펀드존속기간, 우선손실충당비율, 관리보수, 성과보수는 각각의 조건 내에서 최종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제안한 수준으로 결정되며, 출자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용사를 제외한 타 출자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한해 적정성 검토 후 변경 가능함

#### 3. 선정 배제 • 취소 및 제재기준

#### 1)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

#### □ 선정 배제

- 운용사가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거나 과거 5년이 내에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경우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제안된 인력이 과거 5년 이내에 관계 감독기관 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#### □ 선정 취소

- 특별한 사유없이 결성시한까지 결성 총회를 하지 못한 경우
- 공사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- 운용사가 의도적으로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등 제안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특별한 사유없이 결성 총회 후 3개월 이내에 펀드를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

#### 2) 제재 사항

-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선정된 펀드가 투자기간 중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
- 출자확약서 등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, 해당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
#### 4. 선정 절차 및 일정

#### □ 선정 절차

- 공고  $\rightarrow$  출자 설명회  $\rightarrow$  제안서 접수  $\rightarrow$  예비 심사 및 서류 심사  $\rightarrow$  현장 실사  $\rightarrow$  구술 심사(발표 심의)  $\rightarrow$  최종 선정
- \* 제안 운용사(위탁운용사 후보)가 3개 이하인 경우,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절차가 변경됨

#### □ 선정 일정

일자	내용	비고		
'11. 10. 17(월)	제안서 접수 마감	16:00까지		
·11. 11월 상순	최종 선정결과 발표			
·12. 2월 상순	펀드 결성 완료	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		

<sup>\*</sup>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5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#### □ 지원방법

- 공사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또는 CD 1매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
  - ※『제출서류 및 관련양식』은 첨부 참조 (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0부)를 제출
  - 분량 : 15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파워포인트파일 별도 지참)
- □ 접수 마감일 : 2011년 10월 17일(월) 16:00
  - 접수 마감시각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

#### □ 출자 설명회

○ 일시 : 2011년 9월 23일(금) 15:00

○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한국정책금융공사빌딩 8층

# 6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처 : 한국정책금융공사 투자금융부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한국정책금융공사빌딩 3층)

□ 문의방법 : 투자금융부 펀드투자팀 (02-6922-7502~4)

Email: kofc\_ifd@kofc.or.kr

## 2011년 9월 21일

#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